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회의록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일 시 | 2016.4.19.(화) 14:30~ | 참 석 현 황 |
| 장 소 | 부구청장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정원 : 8명 •참석 : 6명 •불참 : 2명(보건소장, 구의회사무국장) |
| 심사방법 | 대면심사 | |

심사안건

□ 2016년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내역

(단위:천원)

| 연번 | 부서명 (신청자) | 사 업 명 | 절약액 (증대액) | 성과금 신청액 | 자체심사 결과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| | | | | 심사의견 | 조정액 |
| 1 | 자치행정과 (최선희 외 2명) |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 | 190,000 | 3,500 | 적정 (격려금) | 3,500 |
| 2 | 전산정보과 (심화성 외 2명) | 전화 전용회선 운영 공공요금 절감 | 13,304 | 6,600 | 적정 (격려금) | 3,000 |
| 3 | 전산정보과 (김영진 외 2명) | 모바일 무료충전서비스 (외부재원 활용) | 16,414 | 3,300 | 적정 (격려금) | 1,500 |
| 4 | 재 무 과 (민태일 외 4명) |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승소로 구유지 재산권 확보 | 679,337 | 6,700 | 적정 (격려금) | 6,700 |
| 5 | 어르신복지과 (이현돈) |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 (사용료 수입) | 7,600 | 660 | 적정 | 380 |
| 6 | 청소행정과 (김응식 외 1명) | 신규 공동주택 개별계량 기기 (RFID) 설치비용 절감 | 143,500 | 3,500 | 적정 (격려금) | 3,500 |
| 7 | 건설관리과 (송유정) | 간판개선 시범사업 | 202,000 | 3,500 | 적정 | 3,500 |
| 8 | 건설관리과 (박선옥) | 국공유지 일제조사 | 14,776 | 1,470 | 적정 | 1,470 |
| 9 | 푸른도시과 (최보리) | 기업·학교·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벚꽃책방 조성사업 | 30,500 | 3,050 | 적정 | 3,050 |
| 10 | 푸른도시과 (김수진 외 1명) | 창천문화공원 정비 | 26,000 | 2,600 | 적정 | 2,600 |
| 11 | 교통관리과 (박희연) | 공영주차장 관리 | 37,420 | 3,742 | 적정 | 3,742 |

심 사 내 용

- 1) [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] 추진시 외부재원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을 절약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2) [전화 전용회선 운영 공공요금 절감]을 위해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비효율적인 전화회선을 정리함으로써 전화요금을 절약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3) [모바일 무료충전서비스사업] 추진을 위해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비예산으로 모바일 충전기를 보급하여 운영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4) [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로 구유지 재산권 확보]를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방문, 자료조사, 소송자료 준비함으로써 구유지를 매각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5) [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]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및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분양대상을 늘려 사용료 수입을 증대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6) [공동주택 개별계량기기(RFID) 설치비용 절감]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규 공동주택의 RFID설치비용을 자체부담토록 함으로써 구비 지출을 절약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7) [간판개선 시범사업]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8) [국공유지 일제조사] 추진을 위해 부족한 측량비를 시비로 확보하고,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여 수입을 증대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9) [기업·학교·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벚꽃책방 조성사업] 추진을 위해 국민은행 및 이화여대의 기부를 유치하고, 희망목공소 및 기존시설을 재활용하여 조성비용을 절감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10) [창천문화공원 정비]를 위해 학생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공원정비 예산을 절감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- 11) [공영주차장 관리]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개별공사를 일괄설계 및 통합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것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지급액 결정

〈 진행순서 〉

개회 및 안전상정(위원장) ▶ 안전설명(간사:예산팀장) ▶ 의견 개진(각 위원)
▶ 의견정리 및 의결 선포(위원장) ▶ 폐회

■ 위원장

성원의 되었으므로 2016년 예산성과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.

본 심사는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건에 대한 신청내용의 적정성과 지급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간사(예산팀장)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■ 간사(예산팀장) : 심사 · 지급기준 및 안건 설명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심사 안건은 총 11건으로 수입증대(지출절약)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
심사의 가장 포인트인 특별한 노력 여부와 제도개선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입증대(지출절약)에 기여하였느냐 하는 부분인데,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안건을 먼저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재무과 소유권이전등기 승소에 따른 구유지 재산권 확보 건입니다.

40년째 재산권을 행사해오던 원고를 상대로 대법원 승소까지 이끌어내서, 재산매각대금에 변상금까지 6억8천만원이상 수입을 증대한 노력은 성과금 대상으로 인정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(환경도시국장)

청소행정과 RFID설치비용 절감 건입니다. 1개 설치비용이 180만원 가량 드는데, 신규공동주택에 82대 설치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.

해당 단지의 조합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, 조합장과의 협의를 위해 청소행정과장과 김응식팀장이 여러 번 방문하면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검토의견엔 창의적인 노력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■ 위원(환경도시국장)

하지만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부서에서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창의적인 노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, 일단 격려금 대상으로 보고 보류해 두도록 합시다.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전산정보과 전화전용회선 공공요금 절감 건도 격려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푸른도시과 벚꽃책방 조성사업 건은 격려금 받았는데 또 신청한 것입니까?

■ 간사(예산팀장)

전년도에 희망목공소 활용 건으로 격려금을 받은 것입니다. 이번에 신청한 건의 절감액 중 희망목공소 활용한 부분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검토의견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고 넣은 것입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국민은행에서 기부를 유치한 것이므로 격려금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그러면 이 안전도 일단 격려금 대상으로 보고 보류해두기로 합시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교통관리과 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■ 간사(예산팀장)

해당 건은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등을 기존에 개별발주 하던 것을 통합발주해서 예산을 절약한 내용입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듯 합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그럼 일단 ②번, ④번, ⑥번, ⑨번 건이 성과금 또는 격려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지급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④번은 성과금 대상으로 350만원을 주고, 나머지를 격려금으로 지급액을 논의했으면 합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④번을 성과금으로 250만원으로 하고, ②번 100만원, ⑥번 100만원, ⑨번 5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차 정리하겠습니다.

혹시 추가로 격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어르신복지과 추모의집 사용료수입 증대 건도 노력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(복지문화국장)

맞습니다. 일단 3배 이상 수입을 증대한 부분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동의합니다.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30만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분양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?

■ 위원(복지문화국장)

1기에 20만원 정도입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그럼 760만원이니깐 38기정도 분양한 것입니까?

■ 위원(복지문화국장)

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전 5개년도 분양 실적이 35기임을 감안한다면 수입증대 실적과 노력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■ 위원(환경도시국장)

건설관리과 국공유지 일제조사사업 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그러면 ⑧번 국공유지 일제조사사업 건은 30만원으로 하도록 합시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동의합니다. 하지만 간판개선 사업 건은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성과금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

푸른도시과 창천문화공원 정비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?

■ 간사(예산팀장)

해당 건은 창천문화공원 노후외벽 벽화공사를 재료비만 들이고 자원봉사와 재능 기부로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해당되지 않는 것 같군요. 추가로 ①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고생한 직원 들을 생각해서 일부 격려금을 주었으면 합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지금까지 총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?

■ 간사(예산팀장)

560만원입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그러면 ①번 ‘찾아가는 동주민센터’ 사업은 격려금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까. 더 의견 없으십니까?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)

④번 재무과 건에 명확히 성과금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지급액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. 서고에서 40년 이상 된 자료를 찾아내 변론자료를 만들어서 40년 이상 무단점유하고 건물까지 지은 대상지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넘게 고생한 건입니다.

■ 위원(경제재정국장)

동의합니다.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.

■ 위원(환경도시국장)

청소행정과 RFID설치비용 절감 건에도 절약에 비해 격려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50만원 정도 더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.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그러면 ④번 재무과 건에 30만원을 더해 280만원, ⑥번 청소행정과는 50만원 더해 150만원으로 하겠습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③번 전산정보과 ‘모바일 무료충전서비스사업’ 건에도 격려금 10만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

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

■ 위원장(부구청장)

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①번 ‘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개선사업’ 은 격려금 대상으로 50만원
 - ②번 ‘전화전용회선 공공요금 절감’ 은 성과금 대상으로 100만원
 - ③번 ‘모바일 무료충전서비스사업’ 은 격려금 대상으로 10만원
 - ④번 ‘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로 구유지 재산권 확보’ 성과금 대상으로 280만원
 - ⑤번 ‘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수입 증대’ 건은 격려금 대상으로 30만원
 - ⑥번 ‘신규공동주택 RFID 설치비용 절감’ 건은 성과금 대상으로 150만원
 - ⑧번 ‘국공유지일체조사’ 격려금 대상으로 30만원
 - ⑨번 ‘벚꽃책방 조성사업’ 건은 격려금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
-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■ 위원일동

동의합니다.

■ 위원(주민자치국장/안전건설교통국장)

이의 없으시면 2016년 예산성과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.

2016. 4. 19(화) 15:00

따로붙임 별지(의결서 및 의결사항)에 서명 날인한다.